



#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작성 안내

## 작성기준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작성안내는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2010.10.8.)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 정부보조금은 상계처리 된 비용항목이 손익계산서 상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표기

## 작성목적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중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보조금은 해당금액의 비용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하고, 상계처리 된 비용항목이 손익계산서 상 구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정(인건비) 비용보전 지원금 상계적용 예

기 존 방 식		변 경 방 식 ('16.1.1. 이후)	
❖ 일자리지원금 5,000,000원 사용시		❖ 일자리지원금 5,000,000원 사용시	
I. 매출액	10,000,000원	I. 매출액	10,000,000원
II. 매출원가	5,000,000원	II. 매출원가	5,000,000원
III. 매출총이익	5,000,000원	III. 매출총이익	5,000,000원
IV. 판매비와 관리비	7,000,000원	IV. 판매비와 관리비	2,000,000원
직원급여	7,000,000원	직원급여	7,000,000원
		(인건비지원금)	- 5,000,000원
V. 영업이익	- 2,000,000원	V. 영업이익	3,000,000원
VI. 영업외수익	5,000,000원	VI. 영업외수익	0원
(생략)		(생략)	
X. 당기순이익	3,000,000원	X. 당기순이익	3,000,000원

## 적용시기

'16년 재무제표 적용('16.1.1.부터 적용) → '17. 4월 사업보고서 제출



# 사회적기업 주요 지원제도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 세제, 판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여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15년 1인당 월 1,271천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0%(계속고용)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 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 자부담률: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사회보험료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105천원)
  - \* 사회적기업 중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

## 사업개발비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고용노동부 70%, 지자체 30%로 매칭하여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사회적기업 주요 지원제도 안내

## ① 인건비지원보조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인증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인건비지원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비용에서 차감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예시) 일자리창출지원금(인건비)을 정부로부터 1,000,000원 지원받은 경우	
(차변) 현금 1,000,000원	(대변) 인건비지원금 1,000,000원 (직원급여 등 관련비용 계정 밑에 차감표시)

### 손익계산서 영향(2016년 예시)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급여	5,000,000	5,000,000
<b>(인건비지원금)</b>	<b>(1,000,000)</b>	<b>(XXXXXX)</b>
상여금	XXXXXX	XXXXXX
제수당	XXXXXX	XXXXXX
퇴직급여	XXXX	XXXX
복리후생비	XXXX	XXXX

### 사업보고서 제출 시 작성 예('17년 4월)

(5)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b>(예시)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원금</b>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기타				천원
계				천원
	기업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기부			천원
	기타			천원
	계			<b>1,000천원</b>





## 지원사업별 회계처리 안내

### ③ 사업개발비지원금

사회적기업은 브랜드개발, 시제품제작,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개발비지원금 중 수익 관련 활동으로 사용되는 사업개발비의 경우 해당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시) 홍보브로셔 제작 등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정부로부터 5,000,000원 지원받은 경우

(차변) 현금 5,000,000원

(대변) 사업개발비지원금 5,000,000원  
(홍보물제작 등 관련비용 계정 밑에 차감표시)

손익계산서 영향(2016년 예시)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b>판매비와 관리비</b>		
직원급여	5,000,000	5,000,000
상여금	XXXXXX	XXXXXX
제수당	XXXXXX	XXXXXX
퇴직급여	XXXX	XXXX
복리후생비	XXXX	XXXX
도서인쇄비	15,000,000	XXXX
<b>(사업개발비지원금)</b>	<b>(5,000,000)</b>	<b>(XXXXXX)</b>

사업보고서 제출 시 작성 예('17년 4월)

(5)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b>(예시) 홍보물 제작 사업개발비지원금</b>	<b>5,000천원</b>
사회보험료				
기타				천원
계				천원
	기업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기부			천원
	기타			천원
	계			<b>5,000천원</b>



# 지원사업별 회계처리 안내

## ④ 사회보험료지원금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회사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시) 회사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정부로부터 1,000,000원 지원받은 경우

(차변) 현금 1,000,000원

(대변) 사회보험료지원금 1,000,000원  
(사회보험료 관련비용 계정 밑에 차감표시)

손익계산서 영향(2016년 예시)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급여	5,000,000	5,000,000
상여금	XXXXXX	XXXXXX
제수당	XXXXXX	XXXXXX
퇴직급여	XXXX	XXXX
복리후생비	XXXX	XXXX
보험료	2,000,000	2,000,000
<b>(사회보험료지원금)</b>	<b>(1,000,000)</b>	<b>(XXXXXX)</b>

사업보고서 제출 시 작성 예('17년 4월)

(5) 자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b>(예시) 사회보험료 지원금</b>	<b>1,000천원</b>
기타				천원
계				천원
	기업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기부			천원
	기타			천원
	계			<b>1,000천원</b>



# 사업보고서 작성 안내

## 사업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은 인증 이후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 10월 말까지(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내용이 반영 되는 재정성과는 4월 사업보고서 제출에만 실시됩니다.

매년 4월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재정성과를 작성·제출해야하며 변경 된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한 확정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제1항)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항목(4월말)	사업보고서 제출항목(10월말)
❖ 제출 대상 해당년도 12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1. 기업현황 2.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3. 사회적목적 재투자 4. 재정성과 및 지출 5. 고용 6. 사회서비스 제공 7. 지역사회공헌 8. 연계현황	❖ 제출대상 해당년도 6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1. 기업현황 2.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3. 고용 4. 사회서비스 제공 5. 지역사회공헌



# 사업보고서 작성 안내

## 손익계산서 상계처리 표기 및 사업보고서 작성

2016년 1월 이후 적용되는 회계처리 변경(상계처리) 사항은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수익에 지원금 내역으로 확인이 불가함으로, 상계처리 된 내용은 반드시 상계처리 해당항목명과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보고서의 “지원내역” 작성 시 해당 지원금액을 정확히 기입하여 지원금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지원금 예시(①+②+③+④)를 반영한 상계처리 표기

### 손익계산서

제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당)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00사회적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IV. 판매비와관리비		15,550,000			퇴직급여	0		X	XXXXXX
직원급여	5,000,000		XXXXXX	XXXXXX	복리후생비	50,000		XXXXX	
<b>(인건비지원금)</b>	<b>(1,000,000)</b>		<b>(XXXXXX)</b>		보험료	2,000,000		XXXXXXXX	
<b>(전문인력지원금)</b>	<b>(1,000,000)</b>		<b>(XXXXXX)</b>		<b>(사회보험료지원금)</b>	<b>(1,000,000)</b>		<b>(XXXXXX)</b>	
상여금	1,000,000		XXXXXXXX		도서인쇄비	15,000,000		XXXXXXXX	
제수당	500,000		XXX		<b>(사업개발비지원금)</b>	<b>(5,000,000)</b>		<b>(XXXXXX)</b>	

☞ 손익계산서 상 상계처리 금액을 반영한 사업보고서 정부지원금 표기

(5)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b>인건비지원금</b>
		전문인력	<b>전문인력 인건비지원금</b>	<b>1,000천원</b>
		사업개발비	<b>사업개발비지원금</b>	<b>5,000천원</b>
		사회보험료	<b>사회보험료지원금</b>	<b>1,000천원</b>
		기타		천원
		계		천원
	기업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기부			천원
	기타			천원
	계			<b>8,000천원</b>



# 사회적기업 재정성과(매출) 기준 안내

## 재정성과 기준(매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수입은 매출액으로 인정되나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및 회비, 기부금 등은 영업외수익으로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시 유용한 tip

사회적기업은 인증 이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서 한해동안의 재정성과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여야합니다. 재정성과는 손익계산서 기준(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작성하며, 매출액은 사업보고서 제출 시 공공시장 매출과 민간시장 매출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매출 관련 회계처리 시 공공기관 대상 매출, 민간기관 대상 매출로 구분하면 매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항목 중 재정성과 관련 자료 제출 시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 사업보고서 재정성과(매출) 작성예시

'15년 전체 매출 100,000천원 중 00도시공사, 00도청, 00군청 등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60,000천원으로 구성 되어있고, 일반소비자, 일반기업 등 민간기업이 40,000천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전체 매출 100,000천원을 구분하여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각 금액을 기입

(6) 재정 성과	매출액	100,000천원	공공시장	60,000천원
			민간시장	40,000천원
	영업이익	XXX천원	당기순이익	XXX천원



#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자산/부채/자본)

## (1)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 ①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②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
- ③ 당좌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등 임
- ④ 재고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임
- ⑤ 투자자산은 장기성예금,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설비자산, 설비확장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특정 목적의 예금을 포함
- ⑥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함
- ⑦ 유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분류 항목의 예는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등 임
- ⑧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
- ⑨ 무형자산의 예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 임
- ⑩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

## (2)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됩니다.

- ①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
- ②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 ③ 유동부채의 예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 등이다.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
- ⑤ 비유동부채의 예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등 임

##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

- ①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함
- ②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임(ex)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
- ③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임



## 손익계산서와 구성요소 (수익/비용)

(1)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
|---------------|---------|---------|-----------|
| ① 매출액         | ② 매출원가  | ③ 매출총손익 | ④ 판매비와관리비 |
| ⑤ 영업손익        | ⑥ 영업외수익 | ⑦ 영업외비용 |           |
| ⑧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 ⑨ 법인세비용 | ⑩당기순손익    |

(2)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3)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입니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합니다.

(4)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합니다.

(5)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임대료,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합니다.

(6)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합니다.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함), 기부금, 유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포함합니다.

# 1. 서비스업 (1) 재무상태표

제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00사회적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부가세대급금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2) 유형자산				
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기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3) 무형자산				
개발비				
(4) 기타비유동자산				
임차, 기타보증금				
자산총계				
부채				
Ⅰ.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세금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Ⅱ.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총계				
자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결손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 XXX원				
전기 : XXX원				
자본총계				
부채및자본총계				

# 1. 서비스업 (2) 손익계산서

제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00사회적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I. 영업수익				
수강료수입				
간병비수익				
재가장기요양-본인				
장기요양-공단				
주간보호-본인				
실습비수입				
사업수입금				
II. 영업비용				
급여				
상여금				
제수당				
집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판매촉진비				
건물관리비				
잡비				
III. 영업이익(손실)				
IV. 영업외수익				
기부금				
후원금				
이자수익				
잡이익				
V.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잡손실				
VI.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VII.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VIII. 당기순이익(손실)				

## 2. 상기업 (1) 재무상태표

제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00사회적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금액		제○○(전)기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부가세대급금				
(2) 재고자산				
상품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2) 유형자산				
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기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3) 무형자산				
개발비				
(4) 기타비유동자산				
임차, 기타보증금				
자산총계				
부채				
I.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세금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II.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총계				
자본				
I.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결손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 XXX원				
전기 : XXX원				
자본총계				
부채및자본총계				

## 2. 상기업 (2) 손익계산서

제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00사회적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I.매출액				
상품매출				
II.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				
기말상품재고액				
III.매출총이익(손실)				
IV.판매비와관리비				
급여				
상여금				
제수당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판매촉진비				
건물관리비				
접비				
III.영업이익(손실)				
IV.영업외수익				
기부금				
후원금				
이자수익				
잡이익				
V.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접손실				
VI.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VII.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VIII.당기순이익(손실)				

### 3. 제조업 (1) 재무상태표

제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00사회적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금액		제○○(전)기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부가세대급금				
(2) 채고자산				
제품				
원재료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2) 유형자산				
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기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3) 무형자산				
개발비				
(4) 기타비유동자산				
임차, 기타보증금				
자산총계				
부채				
I.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세금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II.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총계				
자본				
I.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결손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 XXX원				
전기 : XXX원				
자본총계				
부채및자본총계				

### 3. 제조업 (2) 손익계산서

제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00사회적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금액		제○○(전)기 금액	
I. 매출액				
제품매출				
II. 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기초제품재고액				
당기제품제조원가				
타계정으로 대체액				
기말제품재고액				
III. 매출총이익(손실)				
IV.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상여금				
제수당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판매촉진비				
건물관리비				
잡비				
III. 영업이익(손실)				
IV. 영업외수익				
기부금				
후원금				
이자수익				
잡이익				
V.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잡손실				
VI.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VII.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VIII. 당기순이익(손실)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총괄표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li> <li>○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컨설팅: 연간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코칭, 멘토형</li> </ul> </li> <li>- 전문컨설팅: 연간 3~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형, 지속성장형</li> </ul> </li> </ul> </li> <li>- (사회적기업) 연간 2천만원, 5년간 총 5천만원 한도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총 5백만원 한도</li> <li>*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기존 지원금액 공제</li> </ul>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li> <li>*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52), 자치단체(26),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751개소</li> <li>* '12년 구매실적: 1,916억원, '13년 구매실적: 2,632억원</li> </ul>	-	○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li> <li>*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li> </ul>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li> <li>○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li> <li>○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li> </ul>	-	○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105천원)</li> <li>* 사회적기업 중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li> </ul>	-	○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li> <li>○ 200만원 한도(3년간, 기업당 전문인력 3명·고령 전문인력 1명,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li> <li>* 자부담률: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li> <li>○ '15년 1인당 월 1,271천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li> <li>*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li> <li>- 사회적기업: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0%(계속고용)</li> </ul> </li> </ul>	○	○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amp;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li> <li>* 고용노동부 70%, 자자체 30%로 매칭하여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li> </ul>	○	○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자펀드)를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투자운용사)</li> <li>* 펀드규모: '11년 42억원, '12년 40억원, '13년 60억원, '14년 40억원</li> </ul>	○	○



#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